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신 항 만 건 설 축 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는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됨에('23.10.31.)따라, 이를 고려한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

3. 주요내용

신항만건설촉진법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항만법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, 이와 연계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 필요(안 제10조 및 제12조~제1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1호 중 “법 제9조제2항”을 “법 제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법 제10조제2항”을 “법 제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)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10. (생략) 11.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·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.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·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.·1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10조(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) ①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법 제9조제1항 ----- ----- ----- 12. 법 제9조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3.·1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해	<삭 제>

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신항만건설사업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2.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

3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30조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

4. 항만·교통·건축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13조(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)
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위원회 위원(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

<삭 제>

<삭 제>

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
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
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
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
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
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
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
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
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
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
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
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이었던 경우

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
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
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
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

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
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
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
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
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
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
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
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(위원의 해임·해촉) 해
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
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3.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

<삭 제>

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
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
우

제14조(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)

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
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
사항
2.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
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
장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
에 의한 신항만시설의 구조
및 형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
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심

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
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
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
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

<삭 제>

<삭 제>

때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분야별 소위원회)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

<삭 제>

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④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7조(간사)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②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8조(수당 및 여비) ①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
부 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41